

결혼·임신 이유

직장여성 퇴직강요 급증

여성단체 작년 73건 사례접수

결혼·임신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당하는 직장여성의 불완전 고용사태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76년 여자는행원의 결혼각서제 철폐 이후 자취를 감춘 조기퇴직 강요가 최근 업무 박탈·부서 이동·축탁 고용계약·지방 발령 등

간접적 방법으로 퇴직을 이끌어내는 신종 조기퇴직제로 탈바꿈하고 있어 여성계가 '부당 노동행위'라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여성민우회 등 전국 7개 여성단체에 접수된 결혼·

임신으로 인한 퇴직사례는 모두 73건으로 유형별로 △부당 인사발령=지방 진출·부서 이동·대기발령 △압력·회유·폭행을 통한 직접적 퇴사 종용 △근로조건 변경 및 모성보호 기피=임시직 전환·출산 휴가기간의 단축·호봉동결·과다 업무 부과 △업무 박탈 및 업무 축소 △조기 정년 및 차별 정년제 △퇴직각서제 △감원때 결혼한 여성의 우선 해고 △임시직으로 채용해 결혼·임신때 재계약 중단 등으로 나타났다.

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여성이었다.

취직시켜준 사람 등 인맥을 통해 퇴직압력을 가하는 경우도 많아, 사투자금융에 다니던 윤아무개씨는 결혼을 앞두고 결혼후 계속 근무를 희망하자 회사측이 "대기발령 내겠다" "임신하면 손님들에게 인상이 좋지 않다"고 퇴직을 부추기는 한편 시아버지될 사람에게도 퇴직시키라고 압력을 넣어 결국 사표를 냈다.

결혼퇴직제를 고수해온 사생명

부서이동·임시직전환등 갖가지 수법 등장 “평생노동권 침해” 여성계 대책 마련 부심

지난해 4월 결혼한 ○방적의 김아무개씨는 결혼 직후 회사로부터 축탁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고 응하지 않았으나 업무를 박탈당해 4개월만에 사표를 내고 말았다.

△중기의 한 간호사는 결혼 뒤 전문분야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총무과로 발령이 났고, △정밀은 지난해말 직원 92명을 대기발령시킨 뒤 올 1~4월중 퇴직하면 퇴직금에 11개월분의 월급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조기 퇴사를 유도해 절반가량이 사직

보험은 90년부터 '대외정보 유출을 막는다'는 구실로 결혼한 여성을 축탁직으로 전환시켜 계속 근무를 허용한다. 그러나 결혼한 여직원들은 "회사가 축탁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자동 해고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늘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결혼휴가, 산전산후 휴가를 끝내고 출근해 보면 책상이 치워지고 일거리를 주지 않는 사례도 흔하다. "결혼후 출근하면 책상을 치우겠다"는 회사의 퇴직압력에 맞서 1년 가까이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한 여직원은 "결혼·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마음놓고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사회풍토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혼 뒤 여직원의 호봉을 초임호봉으로 강등시키고, 결혼 예정일을 회사에 알리면 임시직 또는 축탁직으로 전환시켜 일정기간 뒤 재계약을 중단시키는 사업장이 많다고 지적한다.

이런 여성의 불완전 고용현실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이효재 회장은 "80년대 말부터 나타

나기 시작한 신종 조기 퇴직제는 여성의 평생노동권을 침해하고 인간비 절감을 위해 여성을 사실상의 임시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라면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을 강화해 여성의 불완전 고용을 법적·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결혼·임신·출산을 이유로 여성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일 오후

2시30분 서울 종로성당 3층에서 '신종 결혼·임신퇴직 및 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8,9월엔 대전·대구·부산 등지에서도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여성민우회·대구여성회·부산여성회·충남여성회는 상설 고발·상담창고도 개설하기로 했다. 20일 토론회는 △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노동자회·인천여성노동자회·부산여성회·제주여민회·충남여민회·대구여성회 등 7개 여성단체의 상담사례 분석 보고 △결혼·임신과 관련해 지난 1월 퇴직당한 전 부산 양산여중 교사 김신향씨 등 3명의 사례발표 △법적·제도적 문제점과 극복방안(박주현 변호사) △조직적 해결의 문제점과 극복방안(최영희·석탑노동연구원 부원장) 등으로 진행된다.

〈신연숙 기자〉

